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748호 2023. 5. 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금사래길 9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별도 열람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5.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5-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49	인천광역시 서구 금사래길 9 (대곡동)	20201123	논 골짜기 옛 지명에서 착안	
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0-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51번안길 3 (당하동)	20081231	청마로51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 있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90-2	인천광역시 서구 푸르내2길 46 (당하동)	20200720	푸르내길에서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6-7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145 (당하동)	20200420	'서로플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세번째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9-3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413 (청라동)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랗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9-2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417 (청라동)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랗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미전동 1153-4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42번길 68 (미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미전동 1153-3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42번길 66 (미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5-1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405-3 (당하동)	건물 말소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2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405-29 (당하동)	건물 말소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9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5.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본 조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개시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추후 사용될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위한 조항 개정(안 제12조제2항 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 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 규정 마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23조제6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93,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본 조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개시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추후 사용될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위한 조항 개정(안 제12조제2항 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 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 규정 마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23조제6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제23조제6항 중 “ 「한국방송대학교 설치령」 ”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의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생략)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삭제 ⑧ ~ ⑫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⑧ ~ ⑫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 1. 퇴직하는 경우
-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

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 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9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5.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 시행을 통한 서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제도 마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에 대한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신설

○ 자원봉사자에 대한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신설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
 (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3. 의견제출

-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2일까지
-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744, FAX (032)560-2720
 -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만 있는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도 적용하여,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 시행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에 대한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신설
(안 제6조제2항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별첨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조례 발췌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5. 생략

6.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7. ~ 14. 생략

② ~ ③ 생략

